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로드맵 발표

2026.02.26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최종 로드맵이 발표되었으며, 2026년 3월까지 추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4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최종 로드맵은 2026년 2월 4일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에서 논의된 산업계·투자자·관계부처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2021년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이 처음 언급된 이후 약 5년 만에 드디어 구체적인 실행안이 도출된 것입니다.

이번 로드맵 확정으로 한국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에 이어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ISSB") 기준에 기반한 의무공시 체계로의 전환이 공식화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1) 대기업부터 단계적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EU,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시 역량이 있는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의무공시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 약 58개사는 2028년(FY2027)부터 공시 의무가 부여됩니다.

국내 ESG 공시 기준은 ISSB 제정 기준에 기반하되,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 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톤 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 등은 선택적 공시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공시 의무가 부여된 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3월말)에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하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에 한해 반기 결산시점인 8월 중순까지 공시 시점을 늦출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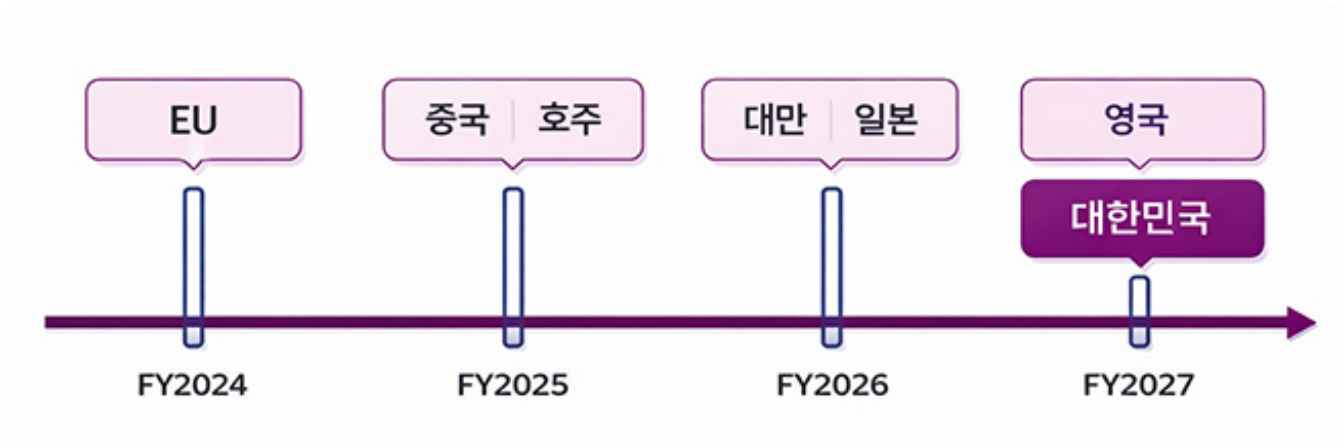
아울러 공시 내용의 제3자 인증은 자율적 인증으로 운영되나, 추후 국제동향 등에 맞추어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 체계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2) Scope 3 배출량 포함 및 유예

가장 관심이 높았던 Scope 3 배출량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공시 항목에 포함시키되,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의무공시 시작 이후 3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2031년(FY2030)부터 Scope 3 데이터를 공시하면 됩니다.

나아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저탄소 전환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등 전환 금융 체계가 함께 구축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가치사슬의 경우 공시가 우선 면제되며, 제도 안착 이후 공시 면제 범위는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국가별 ESG 공시 의무화 타임라인]



[국가별 ESG 공시 의무화 현황 비교]

| 국가 | 공시 기준 | 공시 분야 | 우선적용 대상 | 적용 시점 | Scope 3 포함 여부 | 인증 여부 | 기타 |
|----|---|----------|------------------------------------|---------|---|------------------|----------------------------------|
| EU |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 지속가능성 전반 | 기존 NFRD 적용 대상 상장사 등 CSRD 1차 적용 기업 | FY 2024 | Scope 3 포함 공시 | 인증 의무 | |
| 중국 | 3대 거래소 지속가능한 발전 정보 공개 지침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정책 방향 기반) | 지속가능성 전반 | 상하이·선전 주요 지수 편입 대형 상장사 | FY 2025 | Scope 3 포함 공시 | 인증 권장 | 국가통합 기준 (CSDS): FY2026 자발적 공시 시행 |
| 호주 | AASB S2 기후 공시 기준 (호주회계기준위원회) | 기후 | 호주 상법에 정의된 상장 및 비상장 대기업 (Group 1)* | FY 2025 | Scope 3 포함 공시 *공시 의무 도입 이후 1년간 유예 허용 | Scope 1,2 배출량 한정 | |
| 대만 | IFRS S1·S2 | 지속가능성 | 대만증권거래소 | FY | Scope 3 포함 | Scope 1,2 | |

| | | | | | | | |
|----|------------------------------------|-----------|--|---------|---|-------------------|--|
| | 정합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대만 금융위원회(FSC) 주도) | 능성 전 반 | (TWSE) 및 증권장외시장(TPEX) 상장사 중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100억 NTD 이상 | 2026 | 합 공시 *공시 의무 도입 이후 3년간 유예 허용 | 배출량 한정 | |
| 일본 | SSBJ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 지속가능성 전 반 | 도쿄증권거래소 (TSE) 프라임 시장 상장사 중 시가총액 3조 엔 이상 기업 | FY 2026 | Scope 3 포함 공시 *도입 후 2년간 재무제표 이후 별도 제출 허용 | 인증 의무 (FY2027~) | 현행 유가증권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공시를 SSBJ의 확정 기준 에 맞춰 고도화 및 단계적 의무화 추진 |
| 영국 | UK SRS (IFRS S1·S2 정합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 지속가능성 전 반 | 영국 상장사 대상 | FY 2027 | Scope 3 자발적 (comply or explain) 공시 *공시 도입 이후 1년간 유예 허용 | 정부 차원 감독 체계 도입 예정 | SDR (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체계 하에 ISSB 기준 (UK SDS) 채택 절차 진행 중 |

* 호주의 대기업 Group 1은 다음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및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제도 상 배출 기준 초과 기업을 의미함 : (1) 연결 매출액 5억 AUD 이상, (2) 연결 총자산 10억 AUD 이상, (3) 직원 수 500명 이상

** 일본의 경우, 인증 의무가 부여된 이후 첫 2개 연도는 인증 범위가 Scope 1,2 및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로 한정됨

(3) 공시 채널 - 거래소 공시 도입 후 법정공시 전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 공시 형태로 운영하되, 제도가 안착된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유가증권보고서 등 법정 공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정 공시로 전환될 경우 공시 위반 제재에 대한 기업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제도 운영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 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이 허용됩니다.

[국가별 ESG 공시 유형]

| 국가 | 공시 유형 | 비고 |
|----|-------|--------------------------------------|
| EU | 의무공시 | 사업보고서(Management Report) 내 통합 공시 |
| 중국 | 의무공시 | 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 |
| 호주 | 의무공시 |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내 기후 관련 공시 |
| 대만 | 의무공시 |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내 지속가능성 정보란에 공시 |

| | | |
|-----|------|------------------------------------|
| 일본 | 의무공시 | 유가증권보고서 내 지속가능성 정보란에 공시 |
| 영국* | 의무공시 |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내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

* SDR (Sustainability Disclosure Requirements) 체계 하에 ISSB 기준(UK SDS) 채택 절차 진행 중

2. 시사점

ISSB에 기반한 ESG 의무공시 체계 로드맵이 공식화됨에 따라, 의무공시 대상 기업은 기후관련 위험과 재무적 영향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 기준과 용어에 맞춰 합리적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에서의 신뢰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Scope 3 배출량 공시에 대한 유예기간 역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급망 실사 체계 및 데이터 산정·관리 인프라를 정비할 수 있도록 부여된 한시적 준비기간으로 평가됩니다. 공시 대상 기업은 이 기간 동안 협력회사 데이터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정보의 신뢰성 및 추적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ESG 정보가 유가증권보고서 내 법정공시 사항으로 편입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ESG 공시 내용의 허위오류 또는 중요한 누락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책임 및 제재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공시에 관한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무보고 수준에 준하는 공시 통제 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공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적시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구성원

송수영

변호사

02-316-1636

sysong@shinkim.com

최석

변호사

02-316-1758

schoi@shinkim.com

김명서

전문위원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02-316-4317

yichoung@shinkim.com

유민석

변호사

02-316-1786

msyu@shinkim.com

02-316-1693
msekim@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